군보

홍성군
HONGSEONG-GUN

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840호 ◆ 2023. 5. 25.(목)
발 행: 홍성군
편 집: 홍보전산담당관(041)630-1223

입법예고

○ 제2023-990호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회람								

홍성군 공고 제2023-990호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홍 성 군 수

1. 조례명 :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운영 실적이 없는 “마을만들기 정책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안건 발생시 구성 및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규정 신설(안 제4조)

나. 회의개최 관련 내용 개정(안 제5조 제1항)

- 정기회의, 임시회의 → 안건 발생시 개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농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행정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우편번호 : 32228,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전화 : 041)630-1486, 팩스: 041)630-1667, E-mail: kdg2001@korea.kr

붙임 1.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희망마을협의회”를 “마을만들기협의회”로 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9조제4항제4호 중 “희망마을협의회”를 “마을만들기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장”을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를 “위원회”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위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마을만들기 민간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대해 조직의 운영과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 ---------- ---------- ---------- ---------- ----.
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및 추진위원장이 모여 구성된 희망마을협의회	1. ---------- ---------- 마을만들기협의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② (생략)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9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19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희망마을협의회에서 추천한 마을추진위원장	4. 마을만들기협의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	⑤ ---------- 마

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장으로 한다.	을만들기 업무 담당 팀장----------.
제20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0조(임기) <삭 제>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22조(회의) ① 위원회----------.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위촉----------. 1. ~ 3.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